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459번
- 제안자 : 안광석 의원 (찬성의원 9명)
- 제안일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 : 2021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다자녀 가족의 기준을 2인 이상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8조제2항제8호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기존 100분의 30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등이”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등이”로, “경우(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등이 행복카드에 한함)”를 “경우”로, “30 감면”을 “50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2항제8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21.6.4. ~ 6.1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등이 행복카드의 할인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할인규모를 30%에서 50%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다자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u>다등이</u>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u>다만, 자녀수가 3 이상 기재된 다등이 행복카드에 한함</u>) : 월 사용료의 100분의 <u>30</u> 감면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u>다등이</u> 경우 ----- ----- ----- <u>50</u> 감면
9. · 10. (생 략) ③ · ④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서울시의 저출산과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를 감경하여 다자녀 가정 자녀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본 개정안의 발의취지 〉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다자녀 가족의 기준을 2인 이상의 자녀로 정의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8조제2항제8호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기준 100분의 30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다만,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면 대상과 규모를 각각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8조제2항제8호는 현행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3자녀 이상 가정에 한정하여 월 사용료의 100분 30을 감면하고 있으나, '다동이'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동이'로 개정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를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막내가 13세 이하인 2자녀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동이 행복카드 개요 〉

- 사업목적 : 개인에게 치중되어 있는 과중한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 분담화, 개인과 사회가 함께 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만 19세 이상으로 서울시 거주하는 2년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
- 추진체계
 - 서울시 : 참여업체 지속발굴 / 신분확인용 카드 발급
 - 우리은행 : 신용, 체크카드 발급 / 다자녀가정, 참여업체 우대혜택 제공
 - 참여업체 : 다동이행복카드 소지 가족에게 혜택 제공
 - 다자녀가정: 참여기업과 가드사의 지원혜택을 지원받고 참여기업의 제품을 구매
- 카드종류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신분확인용카드

출처 : 서울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가족-다자녀가정-다동이카드

-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최근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도 실제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서 여가·활동시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다자녀 감면혜택

- 3자녀 : 전기요구할인,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전기요금, KTX운임할인, 국립수목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 어린이집 우선입소,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주택특별공급
- 2자녀 : 코레일멤버십 가입 2자녀 동반 성인 30%할인, 신생아 난청진단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다등이 행복카드 발급

-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들이 통일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여짐.

- 다만, 다등이 행복카드의 할인혜택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성인에게도 적용되나, 본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설치된 청소년시설에 관한 조례인바,
- 본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성인들에게 까지 사용료의 감면 혜택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이에,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완화 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집중할 필요도 있는바, 본 조례 [별표2]에 규정된 이용료 중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결제하는 청소년의 사용료에 한정하여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개정안(제8조제2항제8호)은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으로 감면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코로나19 직전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액은 2억 2천만원 규모이며, 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감면액은 총 11억원 규모,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최초 저소득층·소외계층 청소년 감면으로 시작하여 다둥이, 교육기관 등(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이 교육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대관, 가임여성, 제로페이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평생교육국에서 편성하는 청소년시설의 감면손실 보전액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본 개정안으로 인한 감면손실 보존액의 추계는 코로나19로 청소년시설의 이용자가 급감했다는 점,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추계한 것과 같이 3자녀에서 2자녀로 그 대상을 확대했을 때, 대상증가 비율만큼 사용료 감면 대상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실제 다둥이 행복카드 사용자인 성인들도 본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상황으로 인해 감면손실 보전액의 추계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짐.

※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는 자녀의 수로만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사용료 감면의 대상은 13세 이하의 자녀 뿐만 아니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인 부모까지도 할인대상이 되고 있는바,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의 오차를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예산정책담당관의 '서울시 초등학교 다자녀 학생 현황'을 기반한 비용추계 〉

출생순위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합계
1째	36,150	35,640	35,226	37,962	39,404	36,445	487,865
2째	25,492	25,422	24,742	26,616	27,547	26,537	324,845
3째	4,865	4,544	3,986	4,484	4,458	4,098	54,514
4째	430	438	320	369	331	275	4,849
5째	58	58	39	34	40	30	634
6째	13	6	14	11	7	5	137
7째이상	12	8	4	3	4	1	77

자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2019.10.30.기준)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구분	연도	-	-	-	-	-	-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다동이 이용자의 사용료 추가 감면금액(제8조제2항제8항)	318,296	318,296	318,296	318,296	318,296	1,591,479
	소계(b)	318,296	318,296	318,296	318,296	318,296	1,591,479
	총비용(b-a)	318,296	318,296	318,296	318,296	318,296	1,591,479

출처 : 예산정책담당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의 어려움에 따라 재정적 부담의 정확한 예측이 힘든 상황으로, 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시설의 감면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정하고 있어, 청소년 시설의 감면분 전액을 보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 과도한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청소년시설의 운영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감면액에 대한 전액보전을 위해 평생교육국의 정확한 비용추계 노력과 적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과 출산장려금과 같은 출산 유인정책들의 예산은 지속적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바, 이러한 본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청소년시설 사용료의 감면이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율 상향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출산률 제고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